

고려시대 궁인의 職制와 생활*

권 순 형**

- I. 머리말
- II. 궁인관련 용어와 용례
- III. 궁인의 신분과 직제
- IV. 궁인의 업무와 생활
- V. 맺음말

I. 머리말

궁인은 궁궐 내에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로서 태후나 왕후의 비서 역할, 왕실 가족의 음식 및 의복 마련, 의례의 진행 등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상궁 등 宮官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궁관은 內官(후궁)과 함께 內命婦[內職]을 구성하였다. 궁인은 일반적으로 천인 출신이라 하나 고려의 경우에는 지배층의 딸이 궁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외명부 여성이 궁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궁인은 중국이나 조선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 궁인의 직제와 역할, 지위와 생활 등 궁인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궁인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숙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27-2008-2-A00033).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경이 『한국여성사』 1에서 고려시대 여성사를 개관하며 궁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즉 궁녀로 후궁이 된 자, 궁녀의 범죄, 궁녀 소생 왕자녀에 대한 규제 등을 쓰고 있는데,¹⁾ 관련 사료들을 뽑아 별다른 분석 없이 개괄한 것이다. 허홍식은 『고려시대 소군의 신분상 특성』에서 궁인을 ‘모계가 천인인 관인의 딸로서 궁중에서 사역되는 천인’, ‘왕실의 사치 노예’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²⁾ 그러나 어떤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며, 이 역시 대중용 개설서의 글이라 궁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될 수는 없다.

궁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료부족에서 기인할 것이다. 「후비전」 찬자가 “변경이 많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³⁾고 한 정도가 『고려사』 내직의 사료 상태인 것이다. 이를 보완할 거의 유일한 방법은 비교사적 고찰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동아시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 및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은 조선의 궁인제를 비교해 고찰함으로써, 베일에 가려진 고려 궁인제의 특징과 내용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궁인 관련 용어와 용례를 검토하겠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궁인 관련 용어로는 궁인 외에 宮女, 內人, 侍女, 宮娥, 內中, 女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간의 차이 및 중국, 조선과의 용례 비교를 통하여 고려시대 궁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궁인의 신분과 직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궁인의 신분을 밝히고, 궁인의 규모나 선발, 궁관 및 그것에 임명된 사람 등을 검토함으로써 고려시대 궁인제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궁인의 업무와 생활을 다룰 것이다. 궁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지, 출궁과 혼인, 간통 등 법제와 승은 및 자식에 대해서도

1) 최숙경, 「고려시대의 여성」, 『한국여성사』 1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72), 263-265쪽.

2) 허홍식, 「고려시대 소군의 신분상 특성」, 『한국사시민강좌』 (서울: 일조각, 1994).

3)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서.

검토할 것이다.

이로써 고려시대 궁인제 및 그들의 삶을 알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 직제 전반과 왕실문화의 이해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궁인관련 용어와 용례

『고려사』에는 궁인과 비슷한 단어들이 매우 많다. 궁녀, 내중, 내인, 궁아, 시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같은 의미의 이름만 다른 용어였을까? 아니면 뜻도 구분되는 것이었을까? 일단 궁인 관련 단어들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A-1. 태후가 자주 왕을 대하여 과실을 말하니 왕이 기뻐하지 않았다. 宮人과 宦官들이 서로 경계하여 왕의 과실을 태후에게 말하지 않으니 태후 또한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2, 명덕태후 흥씨).

A-2. 정묘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기녀와 宮女를 거느리고 憲府 북쪽 산에 올라 관람했다(『고려사』 권136, 열전49, 신우 12년 11월).

A-3. 궁예가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 “왕궁이 벌써 승리를 얻었으니 내 일은 다 글렀다”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궁예가) 변복을 하고 북문으로 도망쳐 나가니 內人들이 궁을 청소하고 (태조를) 맞아 들였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A-4. 계해에 車駕가 南京으로 출발하여 內中과 더불어 僧伽窟에 가齋를 베풀고 襯를 시주하였다(『고려사』 권12, 세가12, 숙종 9년 8월).

A-5. 십년 유월 임진에 가뭄으로 演福寺에서 비를 빌었다. 다음날 왕이 宮娥를 거느리고 절에 와 손수 鍾鼓를 치며 기도하였다(『고려사』 권54, 지8, 오행2, 금).

A-6. 밤중에 적들이 또 습격하여 오니 시종하던 관원들과 환관이며 왕비와 궁인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고 오직 玄德, 大明 두 왕후와 侍女 두 사람, 承旨 양협, 忠弼 등만 남아 있었다(『고려사』 권94, 열전7, 지채문).

위의 사료에 의하면 궁인과 궁녀, 내인, 내중, 궁아, 시녀 등은 모두 왕이나 왕비의 곁에서 시중을 든다든지(A-1, A-6), 왕의 행차 시 함께 따라 간다든지(A-2, A-4, A-5), 궁에서 일을 하는 존재(A-3)로서 특별히 이들 간에 어떤 구분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용례를 찾아 보면, 차이도 보인다. 우선 주목되는 것이 內人이란 단어이다. 내인은 A-3 처럼 궁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近侍職 남자를 뜻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魏繼廷이 연로하여 벼슬을 사양하려하자 숙종이 內人 韓皞如에게 명해 가서 설득하게 하였다”⁴⁾는 기록이 있다. 즉 내인은 궁인이란 의미와 함께 왕의 측근신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용어가 궁인이다. 궁인은 A-1처럼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래의 사료는 또 다른 용례를 보여 준다.

A-7. 공민왕 22년 縣人 周英贊의 딸이 明에 들어가 궁인이 되었으므로 승격시켜 知郡事로 삼았으며, 別號를 金羅라고도 한다(『고려사』 권 57, 지11, 지리2, 金州 함안군).

이는 함안군의 연혁을 적은 기사로서, 고을 사람인 주영찬의 딸이 명나라 궁인이 되어 읍호를 올렸다는 것이다. 주영찬의 딸은 일찍이 원에 들어갔다(궁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나라 군사에게 포로로 잡혔다. 그녀는 궁인으로 뽑혀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다니⁵⁾ 당연히 후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궁인에는 후궁이란 의미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궁인이 후궁이란 뜻으로 쓰인 예가 적지 않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4) 『고려사』 권95, 열전8, 위계정.

5) 『고려사』 권44, 세기44, 공민왕 22년 7월 갑진.

<표 1> 고려시대 후궁으로서의 궁인

	왕	궁인 명	궁인의 아버	자식	출전
1	혜종	궁인 哀伊主	大千 連义	태자濟, 明惠夫人	후비전
2	목종	궁인 김씨 [邀石宅宮人]	미상	미상	후비전
3	현종	궁인 김씨 [원성태후]	김은부	덕종, 정종, 인평 왕후, 경숙공주	현종세가 7년 5월 을사
4	"	귀비 庾氏 (← 궁인)	미상	미상	후비전
5	"	궁인 한씨	평장사 韓蘭卿	檢校太師 忠	후비전
6	"	궁인 이씨	급사중 彦述	미상	후비전
7	"	궁인 박씨	內給事同正 濫 其	阿志	후비전
8	"	(광종)궁인 김씨- → 賢妃	미상	미상	현종세가 20년 11월 경오
9	정종	궁인 한씨-> 麗 妃 → 용의왕후	증 문하시중 한조	애상군, 樂浪侯, 開城侯	정종세가 4년 4월 정묘
10	문종	(靖宗)궁인 한씨, 소한씨, 위씨	미상	미상	문종세가 13년 6월 을유
11	선종	궁인 이씨[원신 궁주] → 왕비	이정	한산후 윤	선종세가 9년 4월 무오
12	의종	궁인 無比	官婢 출신	3남9녀	윤관전
13	충렬왕	궁인 無比	泰山郡人 柴氏	미상	최세연전
14	공민왕	궁인 한씨	韓俊	江寧大君[우왕]	공민왕세가 23년 9 월 정축

우선 이들의 신분에 대해 보면, 혜종 궁인 애이주(1)의 경우 아버가 ‘대간’이며 자식이 ‘태자’와 ‘부인’으로 나타남을 볼 때 제법 세력이 큰 호족 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종의 궁인 김씨(2)는 요석택 궁인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요석택을 소유한 택주였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 전기에 천인 출신은 궁이나 원, 택 등을 소유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⁶⁾ 그런 면에서 요

6) “충혜왕 이후에 後宮의 女職은 그 등급의 높고 낮음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私婢와

석택 궁인의 신분은 적어도 양인 이상이었을 것이다. 현종의 궁인 김씨(3), 궁인 한씨(5), 궁인 이씨(6), 정종의 궁인 한씨(9), 선종의 궁인 이씨(11)는 모두 귀족, 관료의 딸이다. 이들의 출신은 매우 화려하다. 아버지가 공주절도사(3)거나 재상(5), 비록 증직이나 문하시중(9), 고려 최고 귀족가문인 인주이씨(11) 등이다. 반면 관비 출신(12)이거나 일반 양인(13) 출신도 있었다.

관비나 일반 양인 출신은 아마 처음부터 후궁으로 간택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일반 궁인으로 들어왔다가 우연히 왕의 승을 입어 후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족이나 관료의 딸들은 처음부터 후궁으로 입궁했을 것이다. 현종의 궁인 김씨, 즉 원성태후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거란의 침입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하던 현종은 공주에 이르렀을 때 절도사 김은부의 환대를 받는다. 거란족이 물러가 개경으로 돌아가던 현종은 다시 공주에 들렀고, 김은부는 그의 딸을 시켜 왕의 의복을 지어 드리게 하였다. 왕이 그녀를 맞아 들여 延慶院主라 했다.⁷⁾ 즉 궁인 김씨는 처음부터 왕의 후궁으로서 연경원을 소유한 원주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얼핏 궁인이라면 천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왕의 승을 입어 아들을 낳고 후궁까지 된 여자를 뜻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궁인은 정식절차를 밟아 후궁이 된 신분이 높은 여성에게도 사용되던 용어였던 것이다. 이로써 궁인이란 단어에는 ‘후궁’이라는 의미와 ‘궁중에서 사역하는 여자’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래의 사료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官妓까지도 역시 翁主나 宅主나 하는 내직을 주었다”(『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내직)는 기사에서 천인출신이 궁이나 태을 소유하는 것이 이전에 없던 일이었음을 말해 준다. 실제로 정종이 가계가 분명치 않은 노씨를 궁중에 들여 총애하고 유언으로 연창궁을 주라했으나 사후 신하들이 이를 반대했음에서도 천인출신이 궁주가 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연창궁주 노씨). 또한 의종의 궁인 무비가 3남 9녀를 낳을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았어도 그저 ‘궁인 무비’였지 궁주로서 궁을 소유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도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7)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원성태후 김씨.

A-8. 정해에 銀川翁主 등 宮人 126명을 내보냈다(『고려사』 권36, 세가 36, 충혜왕 후4년 11월 정해).

은천옹주는 충혜왕의 후궁인 상인 林信의 딸이다. “은천옹주 등 궁인 126명을 내보냈다”는 것은 후궁인 임씨와 일반 궁녀를 합해 126명을 방출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여기서도 궁인이란 단어가 후궁과 궁중에서 사역하는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궁인과 비슷한 여러 용어들, 즉 궁녀, 내인, 내중, 시녀, 궁아 등은 어떠한가? 이들 역시 궁인처럼 후궁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고려시대 어떤 사료를 보아도 이들이 후궁이란 뜻으로 쓰인 예가 없다. 오직 ‘궁인’만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궁인이 후궁이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고려에만 있었던 특수한 일이었는가? 일단 <표 1>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혜종대부터 공민왕대까지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내내 그러했다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전 判事 金原浩의 딸로 宮人을 삼았다”⁸⁾는 기사에서 보듯 궁인이 후궁이란 의미로 계속 쓰이고 있다. 조선 초기 실록에서 이런 사례는 매우 많이 나온다. 그러나 점점 후궁을 궁인으로 칭하지 않게 되어 성종대가 되면 실록에서 후궁으로서의 궁인 용례를 더 이상 찾기 어려워진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당과 송 등에서도 역시 궁인이 후궁이란 뜻으로 쓰였다.⁹⁾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사서에 별로 보이지 않는

8)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3월.

9) 김호는 당대에 내관이나 궁관이 궁인으로 통칭되었다 하였다. 김호, 『당대 황실 여성의 생활과 지위』, 『동양사학연구』 제97집 (2006), 7쪽; 김호, 『당 전기 중앙관부와 황제 시봉기구』, 『중국사연구』 제26집 (2003), 91쪽. 『당서』의 “三月, 詔宮人劉氏、王氏並爲妃”(『新校本舊唐書』 권18, 本紀 18, 상, 武宗 李炎 會昌 元年 以前, 584쪽)라는 기사를 보면, 일반 궁인을 단번에 정一品 妃로 삼을리 없으므로 유씨와 왕씨는 내직에 속한 정一品 이하의 후궁이었을 것이다. 또 『송사』의 “高宗 以宮人黃氏 侍光宗於東宮 及卽位 爲貴妃”(『新校本宋史』 권392, 열전 151, 趙汝愚, 11983쪽)에서도 황씨 역시 이미 후궁이었기에 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데 비해 고려는 상당히 많고 일반적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결국 고려시대 내직제의 미발달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¹⁰⁾ 고려시대에 후궁의 직은 귀비·혜비 등의 妃뿐이었다.¹¹⁾ 때문에 妃 이하의 많은 후궁들은 궁이나 원을 가졌으면 공주, 원주 등으로 불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저 ‘궁인’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꼭 궁이나 원이 없는 후궁만이 궁인이라 불린 것은 아니다. 앞의 김은부 딸 원성태후처럼 연경원주이면서 궁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궁이나 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妃도 아닌 후궁의 존재가 있는 한 ‘궁인’이란 범칭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직제가 발달한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는 구태여 ‘궁인’이란 호칭을 쓸 필요 없이 ‘소의’·‘숙용’ 등 직명을 그대로 부르면 된다. 뿐만 아니라 내명부 직제가 정비될수록 후궁과 일반 궁인간의 지위 격차도 점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지칭하는 ‘궁인’이란 호칭은 날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결국 고려시대에 후궁을 궁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당시의 내직제 정비 수준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후궁직이 妃밖에 없었음은 이미 말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고려시대에 일반 궁인들의 직제는 어느 정도나 갖추어져 있었을까? 이들과 후궁은 지위 면에서 얼마나 격차가 컸는가? 이하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궁인의 신분과 직제

우선 고려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궁인으로 선발되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다.

10) 권순형, 『고려 내직제의 비교사적 고찰—요·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9 (2009).

11)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및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내직.

B-1. 俊昌의 어머니는 예종의 궁인 소산이었다. 궁인은 본래 賤隸이므로 舊例에 궁녀의 자손은 7품 관직에 한하고, 과거에 급제한 자만 5품에 이르게 하였다. 준창이 이에 이르러 3품에 임명되었지만 대간들이 위축되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그는 벼슬이 추밀원사에 이르러 죽었다(『고려사』 권100, 열전13, 이준창).

이준창의 어머니는 천한 궁인의 딸이라 그 자식의 관직임명에 제한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궁인은 본래 천예’라는 위의 구절에서 궁인이 기본적으로 천인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천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궁인이 되었을까? 아래의 사료는 이에 대해 부족하나마 답을 준다.

B-2. 왕이 南郊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龍德의 집에 갔다. 용덕은 일명 加也只이니 通濟院의 여종인 書雲正 崔天儉의 첩 소생이다. 처음에 毅妃의 궁인이었는데 승은을 입어 총애가 의비를 넘었다. 왕이 이날부터 그 집에 갔다(『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10년, 윤10월).

의비의 궁인이었던 용덕은 서운정 최천검의 첩인 통제원 여종의 딸이었다. 즉 관리의 천첩 딸이 궁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謹妃의 궁인이었던 釋婢의 경우는 신분을 잘 알 수 없다. 그녀는 書雲官 副正 盧英壽의 딸인데, 노영수는 長寧公主의 媵臣이었다.¹²⁾ 잉신이란 시집을 때 따라온 신하로서 양친 여부는 불확실하다. 장녕공주는 충혜왕의妃인 원나라 鎮西 武靖王 焦八의 딸 덕녕공주 소생이다.¹³⁾ 釋婢는 그 이름으로 볼 때 노영수의 열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관리의 열녀들이 궁인이 되었는데, 물론 모든 궁인이 다 열녀 출신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관비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또 태산군인 시씨의 딸이었다는 충렬왕의 궁인 무비¹⁴⁾에서 보

12)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7년 12월 임술.

13) 『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2 덕녕공주.

14) 『고려사』 권122, 열전35, 방기 환자 최세연.

듯 양인 출신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궁인은 양인 출신도, 천인 출신도 있었지만 B-1의 사료에서 ‘궁인은 본래 천예’라 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이 천인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궁에는 이들 외에 허드렛일을 하는 宮婢 혹은 院婢, 水汲의 존재도 있었다. 예컨대 裴侏은 興海郡 사람이며 그의 어머니는 궁비였다⁵⁾는 기록 등이 보인다.

그렇다면 궁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현종 때 교방을 혁파하고 궁녀 1백 명을 내보냈다는⁶⁾ 것을 보면 교방에만 1백여 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또 앞의 은천옹주 사례에서 은천옹주와 궁인 120명을 내보냈더니 궁인 일부가 이 정도면 전체 규모는 수백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선발되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려사』에 궁인 선발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선발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각 궁 별로 수시로 뽑아 썼던 것 같다.⁷⁾ 선발 시의 나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던 것 같다. 고려 말 윤소중이 “궁녀 내시들에 대하여서도 程子が 경연에서 임금에게 준 조언을 채용하여 모두 40-50세 이상의 후덕하고 정중한 사람들을 뽑아서 곁에 있게 하고 나이 젊은 자들은 곁에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임금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근원을 막을 것입니다”⁸⁾라는 상소를 올린 데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궁인들 중에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흔히 알려진 상궁 등이 그들인데, 이를 궁관이라 한다. 이들은 내관(왕의 후궁들)과 함께 내직[내명부]을 구성하고 있다. 고려시대 내직관련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고려사』 권124, 열전37, 폐행2, 배전.

16) 『고려사』 권4, 세기4, 목종 12년 2월.

17) 고려는 사료가 없지만, 조선의 경우 각 처소에서 독자적으로 궁녀를 충원했다 한다. 신명호, 『궁녀』 (서울: 시공사, 2004), 88쪽. 고려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고려사』 권120, 열전33, 윤소중.

B-3. 고려의 제도에 왕의 어머니는 王太后라고 하고 嫡은 王后라 하며 妾은 夫人이라고 했으니 貴妃, 淑妃, 德妃, 賢妃 등이 이것이며 품위 [秩]는 모두 正一品이다. 그 외 尙宮, 尙寢, 尙食, 尙針도 다 정원[員]과 위차[次]가 있다. 靖宗 이후 혹은 宮主, 혹은 院主, 혹은 翁主라고 부르는 등 변경이 많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위의 기록에 의하면 후궁으로 귀비, 숙비, 덕비, 현비 등 정1품의妃가 있었고, 궁관으로 상궁, 尙寢, 상식, 尙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정원과 위차’가 있었다는데서 궁직이 공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명부의 기사는 좀 더 자세하다.

B-4. 內職은 건국 초기에는 아직 정한 제도가 없었고 后妃 이하가 某院, 某宮 夫人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顯宗 때에는 尙宮, 尙寢, 尙食, 尙針의 職이 있었고 또 貴妃, 淑妃 등의 칭호가 있었다. 靖宗 이후에는 혹은 院主, 院妃라고도 하고 혹은 宮主라고도 불렀다. 문종 때에 宗制를 결정하였는바, 貴妃, 淑妃, 德妃, 賢妃는 모두 정1품으로 하였다. [外命婦는 公主와 大長公主는 정1품으로, 國大夫人은 정3품으로, 郡大夫人和 郡君은 정4품으로 縣君은 정6품으로 되어 있었다.] 충선왕이 宮主를 翁主로 고쳤다. 충혜왕 이후에 後宮의 女職은 그 등급의 높고 낮음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私婢와 官妓까지도 역시 翁主나 宅主니 하는 내직을 주었다(『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내직).

즉 귀비, 숙비 등의 칭호나 상궁, 상침 등의 직이 갖추어진 것이 현종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종 때에 이에 대한 품계가 정해졌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궁직은 상궁, 尙寢, 상식, 尙針이 전부일까? 『禮志』를 보면 이 외에 尙儀¹⁹⁾, 尙服²⁰⁾, 司言²¹⁾, 司寶²²⁾, 司閨²³⁾, 女史²⁴⁾, 司賓²⁵⁾

19) 『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1, 책태후의.

20) 같은 글.

21) 같은 글.

등의 명칭이 보인다. 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들의 품계 및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고려사』는 이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한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중국 사서이다.

『당서』에 보면 궁관 기구로 尙宮局, 尙儀局, 尙服局, 尙食局, 尙寢局, 尙功局이 있었고 거기에 각각 상궁, 상의, 상복, 상식, 상침, 상공 및 하위직 궁관이 있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당의 궁관

기구	관원 (품계)			역할	
尙宮局	尙宮(정5품)	司記(정6품)	典記(정7품)	掌記(정8품)	掌導引中宮。六尙事物出納文籍，皆其印署
		司言	典言	掌言	
		司簿	典簿	掌簿	
		司關	典關	掌關	
尙儀局	尙儀(정5품)	司籍(정6품)	典籍(정7품)	掌籍(정8품)	掌禮儀起居
		司樂	典樂	掌樂	
		司賓	典賓	掌賓	
		司贊	典贊	掌贊	
尙服局	尙服(정5품)	司寶(정6품)	典寶(정7품)	掌寶(정8품)	掌供服用采章之數
		司衣	典衣	掌衣	
		司飾	典飾	掌飾	
		司仗	典仗	掌仗	
尙食局	尙食(정5품)	司膳(정6품)	典膳(정7품)	掌膳(정8품)	掌供膳羞品齊
		司醢	典醢	掌醢	
		司藥	典藥	掌藥	
		司饈	典饈	掌饈	
尙寢局	尙寢(정5품)	司設(정6품)	典設(정7품)	掌設(정8품)	掌燕見進御之次
		司輿	典輿	掌輿	
		司苑	典苑	掌苑	

22) 『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1, 책태후의.

23) 『고려사』 권66, 지20, 예8, 가례2, 왕태자납비의.

24) 같은 글.

25) 같은 글.

		司燈	典燈	掌燈	
尙功局	尙功(정5품)	司製(정6품)	典製(정7품)	掌製(정8품)	掌女功之程
		司珍	典珍	掌珍	
		司綵	典綵	掌綵	
		司計	典計	掌計	
	宮正(정5품)	司正(정6품)	典正(정7품)		掌戒令, 糾禁

출전: 『新校本新唐書』 권47, 志37, 百官2, 宮官, 1226-1230쪽.

상공국은 왕후를 인도하고 문서 등의 출납을 관장했다. 상의국은 의례 관련 일을 보았으며, 상복국은 의복과 神寶를 관장했고, 상식국은 음식, 상침국은 燕寢進御를, 상공국은 女功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 이 외 궁정, 사정, 전정이 있어 감찰 업무를 했다. 고려에도 상궁, 상의, 상복, 상식, 尙寢, 尙針이 있었다. 상공은 보이지 않지만 尙針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면 결국 고려에도 당제와 같은 6상이 있었던 셈이다. 또 그 하위직으로 사언, 사빈, 사보도 보인다. 그리고 사규가 보이는데, 이는 태자내관으로서 상궁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²⁶⁾ 또한 당의 6상국에는 최하위직으로 女史가 있었는데,²⁷⁾ 고려에서도 역시 아래의 사료에서 보듯 여사가 보인다. 고려의 궁관들은 당과 같은 역할을 했을까?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자.

B-5. …… 태후가 임시 휴게소로 들어간다. 尙儀가 “外辦”이라고 하면 司言은 尙宮을 인도하고 상궁은 태후를 인도하여 정전에 나와 앉으려 할 때 尙服은 주립 안의 왼편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서고 사언과 司寶는 주립 안의 오른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선다. …… 독책관이 책문을 읽고 나서 머리를 숙이고 일어나면 태위와 사도는 책을 받들어 상궁에게 주고 상궁은 이것을 받아 司言에게 준다. 사도는 인장과 물품 목록을 尙服에게 주고 상복은 이것을 받아서 司寶에게 준다. 이것이 끝나면 태위 이하의 서편 섬돌로부터 본 자리로 돌아간다(『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1, 冊太后儀 중 大觀殿上冊).

26) “司閨二人，從六品，三司皆如之。掌導引妃及宮人名簿，總掌正、掌書、掌筵。”『新校本新唐書』 권47, 志37, 百官2, 태자내관, 1231-1232쪽.

27) 『新校本新唐書』 권47, 志37, 百官2, 궁관, 1226-1230쪽.

B-6. …… 司閨가 태자비를 인도하여 임시 휴게소에 들어갈 때에는 정해진 부채와 촛불을 든 사람들만이 따라간다. 조금 지난 후 왕태자가 전정에 나오고 사규는 妃를 인도하여 임시 휴게소에서 나온다. 왕태자는 동편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비는 서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각각 동서편 층계를 거쳐 전에 올라 서로 마주 서서 다시 함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司閨가 앞서서 비를 인도하여 서쪽으로 가서 침실로 들어간다. 女史가 태자비를 인도하고 侍女들은 폐백과 예물 등을 받쳐 들고 뒤를 따랐다. 태자비가 들어가 재배한 후 司窻과 여사가 비를 인도하여 전에 올라 예물을 올리고 다시 전에서 내려 또 재배하였다. 환관이 술을 부어 올렸더니 비는 술잔을 입에 대고 재배하였다. 여사는 비를 인도하여 밖으로 나갔다(『고려사』 권66, 지20, 예8, 가례2, 왕태자납비의).

『고려사』에 궁관의 존재는 오직 의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당서』에 보이는 여러 司○ 관직 중 몇 개만 보인다. 과연 나머지 司○ 관직들도 다 설치되어 있었던 것일까? 또 司○ 아래의 典○ 및 掌○ 관직도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도 당과 같은 규모로 6상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 태조 때 내직의 궁관으로 尙宮 3인(정5품 1인, 종5품 2인), 尙官 3인(정6품 1, 종6품 1), 家令 4인(정7품 2, 종7품 2), 司給 4인(정8품 2, 종8품 2), 司飾 4인(정9품 2, 종9품 2)이 있었다.²⁸⁾ 태종 때는 司儀 2인, 司寢 1인, 奉衣 2인, 奉膳 2인을 두었다.²⁹⁾ 즉 6상은 고사하고 궁관 자체가 매우 적었던 것이다. 세종 때에야 당체를 참작하여 尙宮(정5)-司記(정6)-典言(정7), 尙儀-司賓-典贊(이하 품계 동일), 尙服-司衣-典飾, 尙食-司膳-典藥, 尙寢-司設-典燈, 尙功-司製-典綵, 宮正-典正을 두었다.³⁰⁾ 그러나 司○ 와 典○ 관직의 숫자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掌○ 관직도 없어 당과는 전체적인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28)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3월 15일(무진) 및 4월 27일(기유).

29) 『태조실록』 권9, 태종 5년 1월 15일(임자).

30)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3월 8일(경인).

『경국대전』에서는 이와 또 달라지나,³¹⁾ 중요한 것은 과연 궁관직이라 제시된 직책들이나 다 설치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내관도 소의, 숙용 등 모든 후궁이 늘 다 갖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궁관도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 구한말 궁녀의 증언에 의하면 궁관이 제도상으로는 있으나 왕실의 혼례나 궁중 잔치 등 행사시에만 법전에 규정된 궁녀들의 명칭 및 직분이 적용되고, 행사가 끝나면 상의·상침 등의 명칭과 업무는 바로 없어졌다 한다.³²⁾ 물론 구한말은 일제의 영향 등으로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제도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조선은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고려의 경우는 과연 궁직이 상존하며 실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일단 사료에, 의례 때를 제외하고는 상궁 등 궁관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궁인’이란 단어만 나올 뿐이다. 물론 사료 부족 때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흔한 ‘상궁’조차 단 1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이게 실제 관직인가 의심케 만든다.

또 의례 때 궁관이 보인다 했는데, 고려는 왕실 여성이 참여하는 의례도 B-5, B-6에서 보듯 <책태후의>와 <왕태자납비의> 뿐이다. 『고려사』 『예지』를 보면 당연히 왕비가 참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先蠶>³³⁾이나 <冊王妃儀>³⁴⁾, <元子誕生賀儀>³⁵⁾ 등에도 왕비가 의례에 직접 등장하지

31) 정5품 尙宮, 尙儀/ 중5품 尙服, 尙食/ 정6품 尙寢, 尙功/ 중6품 尙正, 尙記/ 정7품 典賓, 典衣, 典膳/ 중7품 典設, 典製, 典言/ 정8품 典贊, 典飾, 典藥/ 중8품 典燈, 典彩, 典正/ 정9품 奏宮, 奏商, 奏角/ 중9품 奏變徵, 奏徵, 奏羽, 奏變宮(『경국대전』 권1, 이진, 내명부).

32) “상궁 이하 주변궁, 수규 이하 장의까지 직제는 『대전회통』 직관 제도에 설치하여 상설되어 있으나 상의 이하의 직은 유사시에만 적용하여 각각 그 사무의 분담이 유해야 담당 업무에 종사하고 그 의례가 끝난 경우에는 역시 이전처럼 상의 이하의 칭호가 해소되고 직제만은 전과 같이 상설된다.” 『여관제도연혁』, 장서각 도서 분류 2-2032; 신명호, 『궁녀』, 149쪽에서 재인용.

33) 『고려사』 권62, 지16, 예4, 길례 중사 선잡.

34) 『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1, 책왕비의.

35) 『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1, 원자탄생하의.

않는다. 중국이나 조선에서 왕비가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친잠례 등을 치르는 모습은 고려에서 찾아볼 수 없다. ‘활발한 고려시대 여성’이라는 통념이 무색할 지경이다. 왜 의례에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는지는 편을 달리 하여 考究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것은 고려왕실의 일부다처제 및 그에 따른 왕비위상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싶다. 고려시대에 왕실여성으로서 확실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태후뿐이다. 그런데 모든 왕비가 자기 아들이 즉위했을 때 생존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지』에 <책태후의>를 치른 것으로 언급된 것은 선종, 희종, 공민왕, 공양왕 때뿐이다.³⁶⁾ <왕태자납비의>도 드물게 있는 일인데, <책태후의> 마저 이러하니 ‘상의’ 등 의례를 맡은 궁관을 상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게다가 궁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더 주목을 요한다.

B-7. 삼월 갑인에 궁인 韓氏로 尙宮을 삼고, 김씨로 尙寢을 삼았으며, 韓氏로 尙食을 삼고, 徐氏로 尙針을 삼았다(『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2년 3월 갑인).

궁인 한씨·김씨 등이 누구인가? 일반 궁인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통상적으로 궁인은 천인 출신이었는데, 천인은 성씨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궁인이 아니라 최소한 양인 신분 이상, 게다가 성씨가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지배신분층의 여성, 즉 후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종 말년에 한씨·김씨·서씨 성을 가진 후궁으로 누가 있었는가? 상궁 혹은 상식으로 임명된 궁인 한씨는 『후비전』에 나오는 궁인 한씨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종 22년(1031) 전후로 한씨 성을 가진 궁인은 그녀뿐이다. 그녀는 양주 사람 평장사 韓藺卿의 딸 萱英으로 檢校太師 忠을 낳았다.³⁷⁾ 상침이 된 김씨의 경우는 잘 알 수 없다. 현종의 후비 중 김씨로는 원정왕후, 원성태후, 원혜태후, 원평왕후, 원순 숙비

36) 『고려사』 권65, 지19, 예7, 가례1, 책태후의.

37)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현종 궁인 김씨.

가 있다. 원정왕후는 성종의 딸로서 현종이 왕위에 오를 때 이미 왕후로 맞이했으니³⁸⁾ 해당사항이 없다. 원성태후·원혜태후·원평왕후는 모두 김은부의 딸이다. 원성태후는 현종 13년(1022)에 왕비가 되었고,³⁹⁾ 원혜태후는 현종 13년,⁴⁰⁾ 원평왕후는 현종 19년(1028)에 사망했다.⁴¹⁾ 원순숙비는 평장사 김인위의 딸로 현종 15년(1024)에 덕비가 되었다.⁴²⁾ 따라서 만일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나마 원순숙비 김씨가 제일 그럴듯하다. 또한 상궁 혹은 상식으로 임명된 또 한명의 한씨나 상침으로 임명된 서씨 역시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다. 궁인 한씨를 제외한 또 한 명의 한씨라면 정종의 비인 용신왕후 한씨뿐이다. 그녀는 증문하시중 한조의 딸로서 정종이 평양공 시절 맞아들여 妃로 삼았다.⁴³⁾ 서씨로는 원목왕후 서씨가 있다. 그녀는 내사령 서희의 딸로서 현종 13년 숙비로 입궁했다.⁴⁴⁾

이렇게 볼 때 상궁, 상침, 상식, 상침의 궁관은 일반 궁인이 아닌 후궁들, 즉 궁인 한씨, 숙비 김씨, 비 한씨, 숙비 서씨가 맡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후궁과 궁인은 내명부의 상하를 구성하며, 전자는 시중을 받고 후자는 시중을 드는 완전히 다른 부류 아닌가? 어떻게 후궁이 궁관직을 갖는다는 말인가? 이상하긴 다음의 사료도 마찬가지이다.

B-8. 병인 3년 봄 정월 기미에 왕의 外戚들인 예부시랑 李預의 처 왕씨 등에게 尙宮 이하의 內職을 주어 왕태후 宮의 관리를 삼고 녹봉을 차등 있게 주었다(『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3년 정월 기미).

38)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원정왕후 김씨.

39)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원성태후 김씨.

40)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원혜태후 김씨.

41)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원평왕후 김씨.

42)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원순숙비 김씨.

43)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용신왕후 한씨.

44)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원목왕후 서씨.

이예의 처 왕씨는 이미 외명부 직첩을 갖고 있다. 그녀의 남편 이예가 정4품 예부시랑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정6품 이상의 관리 부인은 외명부 직첩을 받았다.⁴⁵⁾ 따라서 왕씨는 외명부인데, 다시 상궁이라는 내명부 직에 임명된 것이다. 이것 역시 궁궐 내에 있는 여성의 벼슬체계가 내명부이고, 궁궐 밖 관리부인들의 벼슬체계가 외명부라는 통념에 반한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궁관은 중국이나 조선과 매우 다르다. 현직 후궁이 임명되는가 하면 외명부가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결국 고려 궁관, 나아가서는 고려 내직의 특징이라 하겠는데, 무엇이 이런 특성을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왜 고려에서는 후궁[내관]에게 궁관직을 주었는가, 바꾸어 말하면 왜 일반 피지배층 궁인에게 궁관직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피지배층 궁인이 궁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사료는 없다. 그렇지만 후궁이나 외명부 등 이미 직책이 있는 여성이 궁관을 겸한 게 아니라면, B-5, B-6을 제외한 고려의 어떤 사료에도 상궁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지배층의 내외명부 독점은 고려가 강력한 신분제사회였다는 점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라의 골품제 수준은 아니지만 왕의 자식조차 어미의 혈통을 따져 소군이니 서녀니 하는 판이었으니, 일반 피지배층 여성들에게 관직을 주는 일은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수발을 받아야 할 후궁이 수발을 하는 궁관으로 동시에 임명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무엇이 이 둘을 연결시켰을까? 여기에는 아래의 사료가 참고 된다.

B-9. 貴妃·惠妃·麗妃·華妃는 각 1인으로 정1품이다. 황후를 보좌하며 궁궐 내 婦禮를 논하고 통솔하지 않는 바가 없다. 淑儀·德儀·賢儀·順儀·婉儀·芳儀는 각 1인으로 정2품이다. 敎九와 四德을 관장하

45) “성종 7년 10월에 명령하기를 ‘문무 常參官 이상의 부, 모, 처에게는 작위를 봉한다’ 하였다.”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전주 봉증제도.

며 后禮의 贊導를 맡는다. 美人은 4인으로 정3품이다. 여관을 거느려 제사와 빈객의 일을 관장한다. 才人은 7인으로 정4품이다. 燕寢을 관장하고 絲泉를 다스려서 해마다 獻功하게 한다(『新校本新唐書』 권47, 지37, 백관2, 內官, 1225쪽).⁴⁶⁾

즉 당의 후궁들도 의례, 제사와 빈객, 연침과 여공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물론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상궁 등 궁관들이지만 내관들도 비록 명목이나마 각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서 후궁들을 궁관에 임명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고가 바탕이 되었을 것 같다. 단지 고려의 경우는 이들이 상궁, 상침 등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보다 좀 더 실제적인 감독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백관지』에 상궁·상침·상식·상침만 있고, 의례가 주 역할인 상복과 상의가 빠진 것도 이런 생각을 하게한다. 상복과 상의는 일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설치되었을 것 같다.

셋째, 외명부를 내명부직에 임명한 이유는, 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려는 왕실을 포함한 극소수의 문벌귀족이 자기들끼리 혼인해, 왕위를 계승하고 후비 자리와 고위직을 독점했다. 예컨대 인주이씨의 경우 수많은 왕비를 배출했으며, 또 동시에 수많은 외명부 부인을 배출했다. B-8에서 왕의 외척인 이예의 처 왕씨 등에게 왕태후 궁의 궁관을 삼았다 했다. 여기서 왕태후는 이자연의 딸인 인예순덕태후로, 왕씨는 그녀의 사촌동생[혹은 오빠]인 이예의 처이다. 동시에 왕씨는 인예태후의 며느리인 선종비 貞信賢妃의 친어머니⁴⁷⁾이기도 하다. 즉 왕씨는 인예태후의 사돈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대 귀족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구태여 내외명부를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했다. 이런 폐쇄적인 혼인

46) “貴妃、惠妃、麗妃、華妃，各一人，正一品。掌佐皇后論婦禮於內，無所不統。淑儀、德儀、賢儀、順儀、婉儀、芳儀，各一人，正二品。掌教九御四德，率其屬以贊后禮。美人四人，正三品。掌率女官脩祭祀、賓客之事。才人七人，正四品。掌燕寢，理絲泉，以獻歲功。”

47)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정신현비 이씨.

망, 혈연의식이 내외명부의 구분을 약화시키고, 외명부 여성을 내명부직에
동시 임명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고려시대의 궁인은 후궁과 일반 궁인을 포함한
명칭이었고, 고려의 궁관직은 지배층의 독점물이었다. 고려 내직제는 내관
과 궁관, 내명부와 외명부가 제도적으로는 나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착
종되어 내직과 궁직, 혹은 외직과 궁직이 겹쳐지기도 하였다. 궁궐 내에서
실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했던 일반 궁인들은 아무 직책 없이 그저 맡은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궁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선발되
었으며, 어떤 보수를 받았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겠다.

IV. 궁인의 업무와 생활

궁인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을까? 『고려사』에는 의복과 관계된 일을
했을 ‘침선낭자’⁴⁸⁾나 ‘침공’이라는 구절이 보인다.⁴⁹⁾ 이들은 의복관련 관
청인 상의국이나 잡직서 등에 속해있었을 것이다. 또 “현종이 즉위하여
교방을 혁파하고 궁녀 1백여 명을 내보냈다”⁵⁰⁾는 기록에서 교방 소속 궁
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가무를 익혀 잔치에 동원되었을 것이
다.

그 외 궁인들은 각종 의례와 여러 잡무에 종사했다. 왕이나 왕비, 후궁,

48) “女謁爲政之大害 今針線娘子內寮之女 亦有封翁主宅主者 僭擬踰分殊失尊卑之體”
『고려사』 권111, 열전24, 김숙명.

49) “睿宗三年判 有夫女淫 錄恣女案 針工定屬.”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공식 호
혼.

50) “罷教坊 放宮女一百餘人 毀閨苑亭 珍禽奇獸龜魚之類 放之山澤.” 『고려사』 권4, 세
기4, 현종 즉위년.

태자 등 각 전각에 속해 음식과 의복을 준비하며, 의례 등 공식적인 활동을 보조하고, 일상적인 시중 등 갖가지 일을 했을 것이다. 예컨대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궁에 들어갔을 때 나인들이 궁을 청소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했다거나⁵¹⁾ 제국대장공주의 生男 축하연에 궁인 小尼가 좌석을 마련했다는 사례 등이 보인다.⁵²⁾ 뿐만 아니라 궁인은 왕의 유흥 대상이기도 했다. 우왕이 궁녀를 거느리고 남산에 놀러갔다거나⁵³⁾ 하는 등의 기사가 사료에 많다. 또한 산신제를 지내기도 하였으며,⁵⁴⁾ 왕의 후궁을 들이는데 간여하기도 하였다. 즉 前判事 金希仁은 內人으로 인하여 우왕에게 딸을 들이기도 했다.⁵⁵⁾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던 궁인들은 어떤 보수를 받았을까? 아래의 사료를 보자.

C-1. 雜別賜 문종 30년에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過年別賜 쌀 50섬 國大夫人, 10섬 左右番中禁都知 行首, 8섬 御殿侍女·左右番件班中禁, 7섬 左右件都知, 6섬10말 三司計史, 4섬5말 試三司計史·別駕, 4섬 御殿侍婢·老奴(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녹봉 잡별사).

즉 어전시녀는 8섬, 어전시비는 4섬을 받았다. 이는 공식적인 보수였고, 이 외에 쌀과 옷 등도 지급된 듯하다. 즉 우왕이 강화로 유배된 뒤 都堂에서 우왕에게 의복과 말, 안장을 주고 侍女, 宦者, 內監들의 겨울옷을 공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⁶⁾ 또한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왕이 도평의사사에게 苧布와 麻布 1천 5백 필을 가져 오라 하여 憲妃

5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즉위.

52) 『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 제국대장공주

53) “(十二月) 甲戌 禡如定妃殿 又率宮女 遊男山.” 『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9년 12월 갑술.

54) “二月甲午 宮女祭松嶽還 禡往迎之 射狗以歸.”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2월 갑오.

55) 『고려사』 권136, 열전49, 우왕 13년 9월.

56) 『고려사』 권137, 열전50, 우왕 14년 9월 창왕 즉위.

宮 시녀들과 내시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⁵⁷⁾ 그런데 이처럼 궁인이 녹을 받았다는 것도 고려의 특징이다. 조선의 궁인은 祿이나 料를 받지 못하고,⁵⁸⁾ 대부분 현물로 보수를 받고 있다.⁵⁹⁾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국가관료기구의 공식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고려의 궁인은 공적 존재였던 것이다.

궁인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주체였기에 필요할 때는 추가 세금도 냈다.

C-2. 9년 2월에 각도에서 봉급미를 서울에 보내지 못한 것을 모두 군량에 충당시키도록 명령하였다. 3월에 왕족, 백관 및 장인바치, 장사치, 노예, 중들에게 모두 차등 있게 군량을 내게 하되 왕족과 재추, 복야, 승지는 쌀 스무 섬, 퇴직한 재추, 현직 관리 3품은 열닷 섬, 치사한 3품, 현직 관리인 문무 4-5품은 열 섬, 문무 6품 시위 호군은 여덟 섬, 문무 7-8품, 참서관으로서 해직된 사람은 여섯 섬, 東班 9품, 참외관, 부사, 교위와 南班 9품은 너 섬, 정직·잡직[正雜]의 權務, 隊正은 각각 석 섬, 동반 서반의 산직과 業中僧은 한 섬, 백정, 抄奴, 所由, 丁吏,各司下典, 獨女官, 사원 노비는 열 말, 장사꾼은 대호는 7섬, 중호는 닷섬, 소호는 석 섬으로 정하되 다만 나이 70세 이상 된 남녀에게는 거두지 않기로 하였다(『고려사』 권82, 지36, 병2, 둔전 충렬왕).

즉 원간섭기에 부족한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문무관리로부터 노비

57) 신우가 친히 妓女들의 대열을 접거하고 뒤떨어져서 온 기녀 60여 명에 대하여 벌로 포 1백50 필을 바치게 하였다. 서질이 와서 바칠 말을 독촉하였다. 신우가 도평의사사에게 苧布와 麻布 1천 5백 필을 가져 오라 하여 憲妃宮 시녀들과 내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려사』 권136, 열전49, 우왕 13년 4월.

58)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통권68호 (2004), 258쪽.

59) 조선의 궁인이 녹이 아닌 현물을 받았다 해도, 왕실구성원에게 사적이자 개인적으로 예측된 노비로서 그들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었다. 왕실에 물품을 조달 공급하는 여러 관서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적 위상도 갖고 있었다. 즉 조선의 궁인은 반공반사의 불안정하고 모호한 위상을 가졌다. 같은 글, 263-264쪽.

까지 곡식을 거둘 때 독신 여관 역시 그 대상이었다. 이는 궁인이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경제주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편 궁인은 일단 입궁하면 죽을 때까지 궁궐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나 간혹 궁궐에서 내보내 주는 경우도 있었다. 현종 때 교방을 혁파해 궁녀들을 내보낸 사례⁶⁰⁾처럼 ‘군주의 덕’이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은천옹주 사례처럼 정치적 이유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출궁된 궁인들은 혼인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선왕이 총애 하던 궁인[幸姬] 두 명을 李凌幹과 백문거에게 각각 주었고,⁶¹⁾ 궁인이 백문거에게 시집가 낳은 아이가 德興君 塔思帖木兒이다.⁶²⁾ 이를 볼 때 고려 시대에는 조선과 달리 출궁 궁인에 대한 금혼 규정⁶³⁾이 없었을 뿐 아니라 왕이 신하에게 궁인을 하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혹 원 간섭기, 원의 영향에 의한 특수 상황이 아닐까 의심되기도 하지만, 이미 당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즉 당나라 代宗의 어머니인 肅宗 追贈章敬皇后 吳氏는 숙종이 忠王이었던 시절 현종이 사여한 궁인 중의 한 명이었다 한다.⁶⁴⁾ 이로 미루어 볼 때 출궁 궁인의 혼인은 성리학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기 전에는 금지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궁인이었다가 출궁해 혼인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궁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 게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혼인할 수 없었고, 승은을 입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에 간혹 궁인들의 간통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궁인은 원칙적으로 왕

60) “罷教坊 放宮女一百餘人 毀閼苑亭 珍禽奇獸龜魚之類 放之山澤.”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즉위년.

61) 『고려사』 권110, 열전23, 이능간.

62) “德興君 塔思帖木兒是忠宣王出宮人 嫁白文舉所產者也.” 『고려사』 권40, 열전40, 공민왕 12년 7월 갑술.

63) “조관이 궁중에서 내보낸 궁녀나 무수리를 처·첩으로 취한 경우 …… 모두 장 1백에 처한다.” 『대전회통』 권5, 형전 금제.

64) 『신당서』 권52, 후비 하, 2187쪽; 김호, 『당대 황실여성의 생활과 지위』, 20쪽에서 재인용.

의 여자이므로 간통이 엄격히 규제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충렬왕 때 궁인 柴巨와 內堅 金元呂가 간통하자 둘 다 임진강에 던져버렸다는 기사⁶⁵⁾가 보인다. 또 우왕 때도 鄭賚이란 자가 定妃殿에 들어와 시녀를 간통하니 형장을 쳐서 延安府로 귀양 보내고 시녀 역시 형장을 쳐서 내쫓았다는 기록⁶⁶⁾이 있다.

궁인이 고달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것뿐이었다. 후궁은 애초에 신분이 높은 여성을 간택하기도 했지만, 천한 신분으로 궁인이 되었다가 미모 등의 이유로 후궁이 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궁인 無比이다. 그녀는 관비⁶⁷⁾ 출신이었으나 왕의 총애를 받아 3남 9녀를 낳았다.⁶⁸⁾ 그녀는 궁내의 모든 일을 주관⁶⁹⁾할 만큼 위세가 대단하였다. ‘無比’라는 호칭처럼 그녀는 아마 비교의 대상이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그 미모로 후궁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사』에는 궁희,⁷⁰⁾ 폐행,⁷¹⁾ 폐첩,⁷²⁾ 내폐,⁷³⁾ 폐희,⁷⁴⁾ 폐잉,⁷⁵⁾ 총희,⁷⁶⁾ 잉장,⁷⁷⁾ 행희,⁷⁸⁾ 궁첩,⁷⁹⁾ 폐⁸⁰⁾ 등 후궁을 뜻하는 다양한 용

65)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 23년.

66)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8년 8월 무자.

67) 『고려사』 권12, 2 열전35, 환자 백선연.

68)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69) 『고려사』 권19, 세가19, 의종 24년 사신평.

70) “王左右皆散走 唯小君及宮姬 數人侍側 垂泣而已.”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3, 최충헌.

71) “辛丑 王之嬖倖 挾媚道 密置畫雞於御床褥中 事覺 誣告注簿同正金義輔 與內侍尹至元 通謀祝詛 斬義輔 流至元於無人島.”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16년 9월 신축.

72) “八月 甲子 王以嬖妾死慟哭 不御肉聽政.”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4년 8월 갑자.

73) “庚戌 內嬖明春死 王哀戀不已失聲號哭.”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0년 6월 경술.

74) “且王之潛邸也 光靖王后早薨 不復立后 故即位之後 嬖姬孽子 招權納賄竊弄威柄 朝野缺望.”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4년 12월 갑신.

75) “毅宗時 凡金國所贈絲綢等物 半入內府 以需御用 半付大府 以充經費 王即位以後 悉入內府 賜諸嬖倖 府藏虛竭 徵求至此.”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5년 정일 신

어들이 있어 그녀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후궁이 되면 宮을 받고, 왕이 죽은 뒤에도 후대 왕에 의해 생활 혜택⁸¹⁾을 받거나 사후에 내직을 추증⁸²⁾ 받기도 하였다. 또한 최고 권력자인 왕의 위세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벼슬을 줄 수도 있었다. 무비의 경우도 사위 崔光均이 8품 벼슬에 뛰어올라 임명되고 式目錄事를 겸임하게 되니 사대부들이 모두 분개하였고 간관들이 임명장에 서명을 거부해 임금이 직접 간관들을 불러 서명을 독촉했다는 기록이 있다.⁸³⁾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권력자와 가까웠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도 하였다. 목종 때 궁인 김씨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경주사람 融大가 신라 원성왕의 원손이라 속이고 양민 5백여 명을 노비로 만들어 김씨 및 평장사 韓藺卿, 시랑 金諾 등에게 뇌물로 주었다. 어사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죄를 청해 왕이 김씨에게는 銅 1백 근을 벌금으로 받고, 한인경과 김락은 외방으로 유배시킨 사례가 있다.⁸⁴⁾

이처럼 비록 천인 출신이라도 일단 후궁이 되면 왕의 총애를 업고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고려는 매우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본래의 신분을 완전히 탈각할 수 없었다. 우선 그녀들은 궁

추.

76) “閣門祗候 李尙敦之子化龍 亦登第 以寵姬子妻之 命於玄德宮 迎紅牌 賜內庫銀及匹段”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8년 6월 기사.

77) “溺於宴安 以致媵媻 蠱其心志 闖人專其出納惜哉”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5년 사신찬.

78) “王之幸姬鳳池蓮者 本府妓也.” 『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2, 숙창원비 김씨.

79) “時禡尼近宦官宮妾 不親士大夫 識者憂之.” 『고려사』 권111, 열전24, 임박.

80) “四月甲戌 雨雹 禍以釋迦生日 與諸嬖如花園 觀燈宴樂 迎送錄事李崐適 以聽候內旨 近其側.” 『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10년 4월 갑술.

81) “六月 乙酉制 靖宗宮人韓氏小韓氏韋氏 歲給內莊宅粳米三十石.” 『고려사』 권8, 세가 8, 문종 13년 6월 을유.

82) “庚午 贈光宗宮人金氏 賢妃”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0년 11월 경오.

83)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84)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宮人金氏.

주나 원주 등이 될 수 없었다. 앞서 본 궁인무비는 3남 9녀를 낳을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궁주나 태주 호칭이 보이지 않으며, 처음부터 후궁으로 들어갔지만 신분이 낮았던 노씨도 연창궁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⁸⁵⁾ “충혜왕 이후에 後宮의 女職은 그 등급의 높고 낮음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私婢와 官妓까지도 역시 翁主니 宅主니 하는 내직을 주었다”⁸⁶⁾는 기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신분적 제약은 자식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래의 사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C-3. 明宗의 서자인 중 小君 洪機 등이 권세를 부리며 뇌물을 받으니 조정 관리들이 다투어 그에게 아부하였다. 그러나 민식만은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아우가 “어제서 찾아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는 “찾아가지 않는 것도 나의 지조다”라고 하였다. 하루는 그 아우가 함께 찾아가자고 청하므로 함께 갔었는데 술이 취할 무렵에 불쑥 하는 말이 “무지개 중놈의 무리가 우리나라를 망칠 거야!”라고 하니 아우가 깜짝 놀라서 진땀을 흘렸다. 무지개는 한 끝이 하늘에 속하고 한 끝은 땅에 연접된 것이므로 소군이 왕의 아들이면서 어머니가 미천한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인바 그는 이와 같이 구속 없는 말을 많이 하였다. 閔公珪는 벼슬이 門下平章事 修文殿太學士 判兵部事에 이르렀다(『고려사』 권101, 열전14, 민영모).

궁인이 왕을 모시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를 깎고 중으로 삼아 이를 소군이라고 불렀다⁸⁷⁾는 사실 자체가 차별이다. 중국처럼 가부장

85) “延昌宮主 盧씨는 그 가계가 상세하지 않다. 처음에 정종이 그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궁중에 들어 왔는데 드디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전왕의 유언에 따라 延昌宮을 노씨에게 주었더니 문하성과 어사대에서 논박하여 아뢰기를 ‘노씨는 예절을 갖추어 맞아들이지 않았으며 선왕의 중 잡을 수 없는 명령이니 북종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은 끝끝내 듣지 않았다. 그는 문종 2년(1048) 3월에 죽었다.” 『고려사』 권88, 열전1, 연창궁주 노씨.

86)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내직.

87)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6년 4월.

권이 강한 사회라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어미의 출신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고려는 이들을 차별했고, 일개 관리가 이들을 ‘하늘과 땅에 걸쳐있는 무지개’라 표현할 만큼 천시했다. 궁인의 딸은 양반층과 혼인시키되 남편과 자식에 대해 제약을 가했다. 즉 金漢忠은 처가 문종 婢妾의 딸이었기에 대각에 들어가지 못하였다.⁸⁸⁾ 孫棼 역시 처가가 왕실의 서족이기 때문에 臺省, 政曹, 學士, 典誥 등의 관직에 임용될 수가 없었으며, 아들도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다.⁸⁹⁾ 유석 역시 증조모가 예종의 후궁 소생이었기 때문에 臺諫·政曹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그녀는 천인 출신도 아니고 아전의 딸이었다. 즉 예종이 일찍이 西都를 순행할 때 卞州 아전의 딸이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그를 불러들여 딸을 낳아 유필에게 출가시켰다 한다.⁹⁰⁾

이처럼 고려는 신분제사회로서 천인인 궁인의 지위상승은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다. 이는 고려가 강력한 신분제사회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의 출자가 중시되는, 즉 여성이 남성에게 완전히 속하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고려의 궁인은 그녀의 출신에 따라 그녀의 위상 및 그 자식의 운명이 결정되는 ‘신분에 매인’ 존재였다 하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궁인의 직제와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궁인관련 용어와 용례를 정리하였다. 『고려사』에는 궁녀, 내중, 내인, 궁아, 시녀 등 궁인과 비슷한 단어들도 매우 많다. 이 중 내인은 근시직 남자를 뜻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주목되는 단어는 궁인이다.

88) 『고려사』 권95, 열전8, 김한충.

89) 『고려사』 권102, 열전15, 손변.

90) 『고려사』 권121, 열전34, 양리 유석.

궁인은 궁중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의미 외에 후궁이라는 뜻도 있었다. 당이나 송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고려는 후궁을 궁인으로 칭한 사례가 매우 많다. 그 이유는 고려 내직제 정비가 미흡해 후궁직이妃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에 들어와 내직제가 보다 정비되면서 성종 무렵이 되면 이러한 용례가 없어진다.

제 3장에서는 궁인의 신분과 직제를 다루었다. 궁인은 기본적으로 천인이었지만 양인 출신도 있었다. 궁인의 규모는 수백 명에 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각 궁 별로 필요할 때 수시로 뽑아 썼던 것으로 여겨진다. 궁관으로는 당과 같은 6상이 보이나 여기에는 왕의 후궁이나 외명부 여성이 임명되어 중국 및 조선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고려가 강력한 신분제사회라는 점과 함께, 왕실과 대귀족들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내외명부 구분이 무의미했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 하겠다.

제 4장에서는 궁인의 업무와 생활을 알아보았다. 궁인들은 상의국 등에 속해 의복관련 일도 하고, 교방에 소속되어 잔치에 동원되기도 했을 것이다. 또 왕이나 왕비 등 각 전각에 소속되어 음식과 의복을 준비하며, 각종 의례와 잡무에 종사했을 것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적으나마 녹봉을 받는 공적 존재로서 그렇지 못했던 조선과 차이를 보인다. 또 출궁된 궁인의 혼인을 금하는 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인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승은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궁인의 천한 신분이 없어지지 않아 자식들을 ‘소군’이나 ‘서녀’라 하여 규제가 따랐다. 이는 고려가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음과 동시에 여성의 출자가 중시되는, 여성이 남성에게 완전히 속하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고려의 궁인은 출신에 따라 그녀 자신 및 자식의 운명이 결정되는 신분에 매인 존재였다 하겠다.

투고일: 2010. 10. 25 심사시작일: 2010. 10. 25 게재확정일: 2010. 11. 8.

주제어: 궁인, 후궁, 내직, 육상궁, 궁관

참고문헌

『구당서』

『신당서』

『고려사』

박상진, 『내시와 궁녀』, 서울: 가람기획, 2005.

신명호, 『궁녀』, 서울: 시공사, 2004.

朱子彦, 『后宮制度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8

권순형, 「고려 내직제의 비교사적 고찰-요·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9 (2009).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 일지사, 1987.

김용숙, 「이조후기 궁중어 연구, 구한말의 궁중풍속」, 『향토서울』 13 (1962).

김창현, 「고려시대 후비의 칭호와 궁」, 『인문과학연구』 24 (2006).

김 호, 「당대 황실여성의 생활과 지위」, 『동양사학연구』 97 (2006).

김 호, 「당 전기 중앙관부와 황제 시봉기구」, 『중국사연구』 24집 (2003).

이영숙, 「조선초기 내명부에 대하여」, 『역사학보』 96 (1982).

이정란, 『고려시대 서얼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이정란, 「고려시대의 소군과 국서」, 『한국사연구』 122 (2003).

이정란, 「고려후비의 호칭에 관한 고찰」, 『전농사론』 2 (1996).

이정란, 「고려시대 후비부에 대한 기초적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20호 (2006).

豊島悠果, 「高麗前期の冊立儀禮と后妃」, 『사학잡지』 114편 10호 (동경대학 문학부 사학회, 2005).

도요시마 유카, 「고려전기 후비·여관제도」, 『한국중세사연구』 27호 (2009).

허홍식, 「고려시대 소군의 신분상 특성」, 『택설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호 (2004).

홍순민, 「조선시대 여성의례와 궁녀」, 『역사비평』 70호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Office System and Life of Court Ladies in Goryeo

Soon-Hyung Kwon

This article studied the system and life of court ladies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 analyzed the words and examples connected with the court ladies. There were many similar vocabulary, for examples Gung-In(宮人), Gung-Nyeo(宮女), Nae-Jung(內中), Nae-In(內人), Gung-A(宮娥), Si-Nyeo(侍女), and so on. Among these words, Nae-In sometimes meant the male palace attendants. Especially Gung-In signified the royal harem concubines as well as attendants within the royal court.

Next, the author dealt with the organization of court ladies and their status. Court ladies were basically persons of low birth. A number of court ladies were estimated hundreds of people. And then the palace women except the empress belonged to women's ranking system. Imperial concubines occupied the rank's upper tier, and were classified as Nei Guan(內官). Court ladies laid to the lower tier, and were classified as Gung Guan(宮官). But Imperial concubines or the wives of government officials were appointed Gung Guan in Goryeo dynasty. It is the important difference with Chinese and Josun system.

Finally, the researcher analyzed affairs and lives of court ladies. They worked within six bureaus serving the Empress and Nei Guan in both ceremonial and daily life. If court ladies gave birth to a prince, she turned into imperial concubine. But she didn't free from her birth,

so her son and daughter were discriminated. It means that women's origin was very important in Goryeo dynasty. Also it says that Goryeo wasn't patriarchal society, women didn't belong to men.

Key Words: court ladies, imperial concubines, the system of royal consorts and court ladies, six bureaus, Gung Guan